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1나51123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1나51123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1. 23 선고 2020가단278883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른

담당변호사 양석환

피고, 항소인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애

변론종결 2022. 7. 7.

판결선고 2022. 8. 11.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1. 23. 선고 2020가단27888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5지분에 관하여 2016. 4. 14.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2,844,87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항소 후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① 제1심판결 제3쪽 제6행의 '612㎡ 매수한 다음'을 '612㎡를 매수한 다음'으로 고치고, ② 제1심판결 제5쪽 제5행의 '피고와 D 등 공유인'을 '피고와 D 등의 공유인'으로 고치며, ③ 제1심판결 제5쪽 제18행의 '수익자로서는'을 '수익자가'로 고치고, ④ 제1심판결 제7쪽 제2행의 '악의의 추정력이'를 '악의의 추정이'로 고치며, ⑤ 제1심판결 제7쪽 제5행의 '다른'을 '따른'으로 고치고, ⑥ 피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1) 피고의 부친인 G의 사망 후 유언에 따라 1억 원을 피고가 먼저 가질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피고의

모친 I 단독 소유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면서 2012. 3.경에 피고와 I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하였던 것인데, I이 2015. 5. 15. 사망함에 따라 기존의 합의대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대금을 분배하기 위해 매수희망자의 요청대로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므로, 실질적 상속재산 분할협의일은 2015. 5. 15.이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부상 등기원인 일자도 2015. 5. 15.로 되어 있으므로, 위 2015. 5. 15.로부터 5년이 도과한 후인 2020. 7. 10.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이다.

2) 원고가 2016년경에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사실을 알았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나서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이다.

3) 피고 입장에서는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등기를 경료하면 족하였기에, 굳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이유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가 되지 않고, 피고는 선의였다.

4) 상속인의 특별수익이나 기여분 등을 전부 고려하여 계산된 채무자의 구체적인 상속분으로 사해행위취소의 범위가 산정되어야 한다.

나.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1) G의 사망 후 I 앞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가 I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 제2호증 및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2015. 5. 1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2) 그러나 처분문서의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다카19153 판결 참조),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을 제4호증)의 작성일자가 2016. 4. 14.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에 의하여 2016. 4. 14.에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있었다고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나아가 처분문서인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반증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 일자가 2015. 5. 15.로 되어 있다고 하여도, 이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 증명서류로 첨부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을 제4호증)의 기재와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서 신청인이 신청서에 임의로 기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이것만으로 처분문서인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라고 볼 수 없고, D의 사실확인서(을 제16호증)의 기재는 이 사건의 이해당사자의 진술로서 이를 쉽게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오히려 J의 사실확인서(을 제7호증의 1)에서도 '2016. 4. 14.에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고 기재하고 있는 점 및 증인 D이 1심에서 증언하면서 '피상속인 사망하였을 당시에는 집을 팔면 공평하게 나누겠다는 정도의 추상적인 논의가 있는 정도였고, 완전히 공식적으로 합의한 것은 집을 내놔를 무렵인 2016. 2.경이다.'라고 증언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빨라도 2016. 2.경 내지는 2016. 4. 14.경에 이루어졌다고 봄이 마땅하다 하겠으므로, 위 각 시점으로부터 5년의 기간이 도과하기 전인 2020. 7. 10.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어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6년경에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그를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소가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두고 있었던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여지는 있다.

2) 그러나 을 제7호증의 1의 기재에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래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칠 때 예약금을 1억 원으로 하고, 매매잔대금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서 위 예약금을 공제한 잔액으로 하기로 정하였다가, I이 사망한 후 상속인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공평하게 나누는 것으로 이야기가 오고 간 사실, 그 후 매수자의 요청을 받고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굳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등기원인으로 기재하였고,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이 된 매매예약에 기한 것이 아니라, 별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기한 것이라 하겠고,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며, 제1심판결에서도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는 악의로 추정되는 반면, 이러한 악의의 추정을 반복하여 피고가 선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마. 네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1) 우선 상속인들이 특별수익이라고 볼 만한 생전증여 등을 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상속분을 수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이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I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I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기여분을 이유로 상속분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그 기여분에 관한 가정법원의 심판이 있거나, 공동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해 그 기여분이 산정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피고의 기여분이 인정되거나, 공동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해 피고 주장의 기여분이 산정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구체적인 기여분의 존재에 관하여 살필 필요도 없이, 기여분을 이유로 상속분을 수정하여야 한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주현, 판사 김진철, 판사 이승원

별지